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유재목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,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·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 완화(안 제6조)

- (기존) 3명 → (개정) 2명

나. 그 밖에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삭제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)

## 5. 검토내용

- 현행 조례 제6조제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으로 정비요원의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.
  -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 : 3명 이상
  - 자동차전문정비업 : 1명 이상
-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대상·시설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확보해야 하는 정비요원 인원수가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을 차등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함('23. 2. 28.).
- 광주, 울산 및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소형자동차·원동기전문정비업은 2명 이상으로 정비요원 인원수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고, 청주시도 동일함.
-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도 내 11개 시군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, 도 내 영업 중인 총 29개 관련 업체도 전반적으로 정비요원 확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4. 1. 8. ~ '24. 1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기존 '3명 이상'에서 '2명 이상'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
- 개정에 따라 부실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